

탄 원 서

사건번호 2023재고합12

피고인 망 이관술

탄원인 홍길동 외 명(별지)

항일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의 재심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탄원 취지

탄원인 홍길동 등은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운동기념단체 회원,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으로서, 독립운동가 이관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소위 '정판사 위폐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항일독립운동 당사자의 후손으로서 이관술 선생이 당하신 억울한 누명과 피학살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마땅히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과정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심을 개시해 주실 것을 탄원하며, 별지 탄원인 명단을 제출합니다.

탄원 내용

(1) 독립운동가 이관술

이관술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그중에서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가장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했던 1930~40년대 민족말살통치, 전시총동원체제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엄혹한 통치하에 있던 국내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몇 안 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울산 지역 대지주 부잣집 장손 출신으로서, 또한 서울과 일본 유학을 마친 수재이자 당대 최고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관술 선생님은 안정된 삶의 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탄압당하는 학생, 수탈당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싸우시는,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간교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수감 생활을 겪으시면서도 일본 경찰을 농락하며 수차례에 걸쳐 탈출하여 해방 직전까지 전국을 돌며 항일투쟁을 펼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해방 직후 실시된 최초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김구, 이승만과 함께 '새로 건국될 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셨습니다.

(2) 정판사 위폐 사건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이관술 선생님은 해방된 지 1년도 안 되어 소위 '정판사 위폐 사건'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다시 체포되고 마셨습니다. 이관술을 포함한 10인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서 이 사건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60일 이상 구금한 상태에서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허구로 날조된 사건임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했지만, 당시 친일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결문을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내렸고 이관술 선생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버림으로써 합법적으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관술 선생님은 항일 독립운동가, 민족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갓 위조지폐를 찍어내어 국가의 경제를 파탄시킨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판사 위폐 사건은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 학술적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판사 위폐 사건의 담당 경찰과 검찰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통해 억지로 사건을 꾸며내었으며, 재판부의 판결은 자체 모순을 비롯한 여러 치명적인 논리적, 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부재증명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으며, 피고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물(인쇄판, 위조지폐 등)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판사와 검사는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의 중립 원칙을 파괴해 가며 상호 협력하에 비합법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고, 심지어 「판결문」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판사 위폐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며, 1심 판결은 원천무효이고, 피고인들은 전원 무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 골령골에서의 학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계시던 이관술 선생님은 1950년 6.25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보도연맹원 및 형무소수감자를 학살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불법 처형 명령에 의해 1950년 7월 초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이관술 선생님을 학살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와 2015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불법 처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관술 선생님은 이후에 재심 청구의 기회를 가지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관술 선생님의 억울한 누명을 풀 기회가 영구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 재심 요구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모시지는 못할망정 조작된 사건을 통해 그분의 목숨과 명예를 앗아갔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관술 선생님의 재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허경무 재판장 귀하